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4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12. 1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
행정기구 설치 세부근거 신설 및 개정
- 나. 2022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민선7기 공약사항 및
주요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만족도를
높이고자 행정기구 개편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전면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
세부근거 신설 및 개정
- 안 제1조(목적) :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, 제126조, 제128조 및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제13조 등 인용조문 추가
 - 안 제10조(설치) : 제113조 → 제126조로 개정
 - 안 제14조(설치) : 제113조 → 제126조로 개정
 - 안 제18조(설치) : 제4조의2 → 제7조로 개정
 - 안 제21조(설치) : 제115조 → 제128조로 개정
- 나. 국책사업 및 군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팀 신설 및 명칭변경
- 안 제6조(경제환경국)제2항제5호 : 화훼 → 정원(명칭변경)
 - 안 제11조(소장)제3항제1호 : 감염예방 → 감염병예방(명칭변경),
감염병관리(신설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, 제125조, 제126조, 제128조

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1. 11. 4. ~ 11. 24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” 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, 제126조, 제128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의거” 로 한다.

제6조(경제환경국)제2항제5호 중 “녹지·화훼·산림조성·산림보호·공원개발·공원관리” 를 “녹지·정원·산림조성·산림보호·공원개발·공원관리” 로 한다.

제10조(설치)제1항 중 “제113조” 를 “제126조” 로 한다.

제11조(소장)제3항제1호 중 “보건행정·의약관·감염예방·진료지원” 을 “보건행정·의약관리·감염병예방·감염병관리·진료지원” 으로 한다.

제14조(설치)제1항 중 “제113조” 를 “제126조” 로 한다.

제18조(설치)제1항 중 “제4조의2” 를 “제7조” 로 한다.

제21조(설치)제1항 중 “제115조” 를 “제128조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, 제10조, 제14조, 제18조,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및 「 <u>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u> 」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125조, 제126조, 제128조 및 「 <u>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u> 」 제13조에 의거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경제환경국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녹지· <u>화훼</u> ·산림조성·산림보호·공원개발·공원관리에 관한 사항	제6조(경제환경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정원</u> ----- -----
제10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 및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, 읍·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.	제10조(설치) ① ----- ----- <u>제126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1조(소장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<u>보건행정·의약관리·감염예방·진료지원</u>	제11조(소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<u>보건행정·의약관리·감염병예방·감염병관리·진료지원</u>

현행	개정안
제14조(설치) ① 법 <u>제113조</u>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	제14조(설치) ① - <u>제126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8조(설치) ① 법 제3조 및 <u>제4조의2</u> 에 따라 읍·면을 둔다.	제18조(설치) ① ----- <u>제7조</u> -----.
제21조(설치) ① 법 <u>제115조</u>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·면 출장소를 둔다.	제21조(설치) ① - <u>제128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□ 지방자치법[시행 2022. 1. 13.] [2021. 1. 12, 전부개정]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“행정면”(行政面)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(이하 “행정동”이라 한다)·리(이하 “행정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

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제126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28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